

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[도일용 의원 대표발의]

의안 번호	1961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1. 6. 1.

발의의원 : 도일용 의원, 김보경 의원

1. 제안이유

- 전기자전거 구입비용 지원을 통해 친환경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도심지역 교통체증 해소와 배출가스로 인한 미세먼지 저감으로 군민들의 건강한 삶을 도모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가. 전기자전거 구입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추가 (안 제16조)

3. 개정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」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
- 다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 참조

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를 제17조로 하고,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6조(전기자전거 구입비용 지원 등)** ① 군수는 전기자전거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기자전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군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.
- ③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전기자전거는 법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전기자전거 중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구조와 성능 등이 「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4조의3이 정한 안전요건에 적합한 전기자전거로 한정한다.
- ④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 금액은 한 대당 30만원 이내로 한다.
- ⑤ 그 밖에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신 설>	<u>제16조(전기자전거 구입비용 지원 등)</u> ① 군수는 전기자전거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기자전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군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. ③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전기자전거는 법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전기자전거 중 법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구조와 성능 등이 「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4조의3이 정한 안전 요건에 적합한 전기자전거로 한정한다. ④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 금액은 한 대당 30만원 이내로 한다. ⑤ 그 밖에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.
<u>제16조 (생략)</u>	<u>제17조 (현행 제16조와 같음)</u>

